

# HS 사회복지연구개발센터 규정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센터는 호서대학교 부설 HS 사회복지 연구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센터는 사회복지의 이론적 연구와 공공 및 민간의 사회복지현장에 적용 될 수 있는 실천 및 평가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조사 연구 사업을 하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천의 조화를 꾀하며, 사회복지의 당면과제에 대응함으로써 복지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본 센터는 호서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 내에 둔다.

**제 4 조 (사업)** 본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복지 지원 사업
2. 활기찬 노인 지원 사업
3. 건강가정 지원 사업
4. 정신건강 지원 사업
5. 기타 복지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 제 2 장 기 구 (임원 및 연구원)

**제 5 조 (조직)** ① 센터에는 지역사회복지 지원팀, 활기찬 노후 지원팀, 건강가정 지원팀, 정신건강 지원팀을 둘 수 있다.

② 각 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복지지원팀 :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정책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학술적 실천적 복지연구 및 대안제시, 학술세미나 및 복지관련 간행물 발행,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시설과 연계한 연구 및 복지계열(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학생들의 현장실습 지원
2. 활기찬 노후 지원팀 : 노인여가생활 증진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노인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 및 자살 예방 프로그램 개발,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문제 연구 및 해결 방안 연구, 노인 일거리 지원방안 개발
3. 건강가정 지원팀 : 핵가족화-저출산으로 인한 가족 체계 변화 연구 및 교육, 평등한 가족문화 및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4. 정신건강 지원팀 : 정신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재활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정신 질환의 원인과 치료방안 조사연구, 정신건강을 위한 시민교육 및 홍보

**제 6 조 (임원)** ① 본 센터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1. 센터장 1명
2. 부센터장 1명
3. 간사 1명

② 센터장은 운영위원들이 호선하여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센터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센터장은 센터장이 위촉하고 연구사업과 제반 사무를 관장하고 센터장 유고 시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센터장이 위촉하고 센터 운영에 요구되는 제반 행정 사무를 담당한다.

**제 7 조 (연구원)** ① 센터에는 연구원, 객원연구원,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본 대학교 사회복지관련 전임교원으로 한다.

- ③ 객원연구원은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교외인사 및 산업체 추천인사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위촉한다.
- ④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중에서 각 팀장의 추천으로 센터장이 임명한다.

### 제 3 장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 제 8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운영위원은 센터장, 부센터장, 연구팀장들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센터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센터의 기본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정책
    - 2. 센터의 연구방향의 설정, 주요연구과제 선정과 조정
    - 3. 예산 및 결산
    - 4.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
    - 5. 연구원, 객원연구원 등의 임명 또는 위촉
    - 6.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9조 (자문위원회)** ① 센터의 주요 정책, 프로그램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둔다.
-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학계, 지역사회, 관련 단체의 전문가 혹은 관련인사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09.01)
  -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 임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 제 4 장 운영 및 재정

- 제10조 (재정)** ① 본 센터의 재정은 각종 지원금, 연구프로젝트 용역비, 사업수익금, 기타 기부금 및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 ② 회계연도는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 제11조 (서류 및 장부의 비치)** 연구센터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고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조변경, 개정 2015.09.01)
- 1.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
  - 2. 연구센터 조직 및 소속 연구원의 명부
  - 3. 회계관계 서류
  - 4. 연구 기자재를 포함한 재산목록
  - 5. 연구과제 목록
- 제12조 (재산의 귀속)** HS 사회복지 연구개발센터의 해산 결의가 있을 때는 그 재산을 대학교에 귀속한다.(조변경, 2015.09.01)

## 제 5 장 보 고

**제13조 (보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보고는 연구소 관리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조변경, 개정 2015.09.01)

1. 연구소 운영실적보고서 - 다음해 3월말까지  
(해당 학년도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실적 총괄표 포함)
2. 매 회계연도 결산서 - 다음해 3월말까지
3. 신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월말까지
4. 기타 연구소와 관련된 자료

## 제 6 장 보 칙

**제14조 (준용)**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대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5.09.01)

**제15조 (운영세칙)**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신설 2015.09.01)

###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